



조사하는 용역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의 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’ (PQ)과 다르게 교량 및 터널, 수리시설 등 토목분야가 포함된 대상시설물의 조사에 [서식4]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 주)7.항에 특정기술사(건축구조기술사)를 집어넣어 입찰참가업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용역집행의 공정성, 객관성, 안전성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조항을 삭제할 것. 끝.

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


